

의안번호	제3030호
의결일	2025. . .
연월일	(제회)

의결사항	
------	--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5. 11. 14.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30호
------------	--------

제출연월일: 2025. 11. 14.  
제 출 자: 고 성 군 수

## 1. 개정이유

해당연도 접종 대상자의 접종률 저조로 인한 예산 감액을 줄이고, 조기 대상자 확대로 접종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

- “65세” → “50세”
- 별표 신설: 지원대상(안 제2조 관련) 명시(안 별지)

### 나. 별지 제1호서식(안 제5조 관련) 개정(안 별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2026년 당초예산 확보 예정

### 다. 합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33191(2025. 8. 28.)호]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제도 협의: 협의 완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1376호
  - 가) 예고기간: 2025. 8. 20. ~ 2025. 9. 9.(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붙임

#### 4. 본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65세”를 “50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접종연령은 별표와 같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u>65세</u> 이상 군민으로 한다. &lt;단서 신설&gt;</p> <p>② (생 략)</p>	<p>제2조(지원대상) ① ----- ----- ----- ----- ----- ----- <u>50세</u> ----- ---. 다만, 접종연령은 별표와 같다.</p> <p>② (현행과 같음)</p>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별표] <신설 0000. 00. 00.>

대상포진 지원대상(제2조 관련)

대상	접종개시 연도	비고
55세 이상 군민(1971. 12. 31. 이전 출생자)	2026년	
54세 이상 군민(1973. 12. 31. 이전 출생자)	2027년	
53세 이상 군민(1975. 12. 31. 이전 출생자)	2028년	
52세 이상 군민(1977. 12. 31. 이전 출생자)	2029년	
51세 이상 군민(1979. 12. 31. 이전 출생자)	2030년	
50세 이상 군민(1981. 12. 31. 이전 출생자)	2031년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현행)

##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

피접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지원대상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임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자가 1년 이상 “경남 고성군” 임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대상포진 기접종 내역이 없음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b>고성군수 귀하</b>			
<b>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b>			
<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 목적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input type="checkbox"/> 비용 환수 또는 미환수			
<input type="checkbox"/> 이용 및 보유기간			
<input type="checkbox"/>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000. 00. 00.>

##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

피 접 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지원대상	<input type="checkbox"/> 50세 이상임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자가 1년 이상 “경남 고성군” 임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대상포진 기접종 내역이 없음을 확인 함.		
	<input type="checkbox"/>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 목적 ▶ 예방접종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 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 비용 환수 또는 미환수		<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이용 및 보유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붙임****비용추계서**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가. 관련 조문: 안 제2조  
 나. 비용발생 요인: 50세 이상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전액 및 그 외 군민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1) 사업대상: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 그 외의 사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2) 사업규모

(2025. 6. 30. 기준, 단위: 명)

구 분	인구수	기접종자 <sup>1)</sup>	미접종자	비고
50세 이상	31,828	11,083	20,745	

1) 2017년 이후 시스템 등록된 접종 현황이며, 이전 접종자 및 미등록자 제외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명, 천 원)

구 분	1차 연도 (2026년)	2차 연도 (2027년)	3차 연도 (2028년)	4차 연도 (2029년)	5차 연도 (2030년)	총합계 (평균)
접종(예상)인구 <sup>1)</sup>	4,600	937	812	649	646	7,644 (1,528)
세입 <sup>2)</sup>	84,680	17,180	14,840	11,600	11,560	139,860
세출 <sup>3)</sup>	190,000	93,700	81,200	64,900	64,600	494,400

- 1) 1차년도 : 55세 이상 인구의 55%, 기접종자 제외  
 2차년도 이후: 해당연도 신규 55세 인구 및 매년 1세씩 낮춘 연령의 60%  
 (50세까지 순차적으로 접종)  
 2) 접종(예상)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55%(1차년도)~60%(2차년도 이  
 후) 제외한 본인부담금  
 3) 1차년도 : 백신비용×접종(예상)인구, 2025년 잔여백신 사용  
 2차년도 이후: 백신비용×접종(예상)인구

## 다. 재원조달방안: 2026년~2030년 일반회계로 편성

(단위: 천 원)

구 분	1차 연도 (2026년)	2차 연도 (2027년)	3차 연도 (2028년)	4차 연도 (2029년)	5차 연도 (2030년)	합계
재원 조달	자체재원	190,000	93,700	81,200	64,900	64,600

작성자: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홍경희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사회보장기본법

-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